판결·처분으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투자금과 차를 빼앗은 사기, 상대방에게 징역 3년6개월 선고.

사기 징역 3년6개월 선고

유죄 선고

투자·차량 편취 유죄판결 · 판결



법무법인 해율

법무법인 해율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황이 나빠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2019. 3.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위 합계 39,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0. 1. 13.경 장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redacted]에게 "자동차 할부금융을 통해 21,000,000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벨로스터, 25모4973)를 구입한 후, 박하은에게 위 차량을 인도해 주고 등록 명의를 변경해 달라, 그러면, 그 동안의 투자에 따른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해 주겠다. 또한 매월 청구되는 할부금은 위 박하은이 취직할 예정인 비타에듀에서 지급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 자동차 할부금융사를 통해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박하은에게 인도해 주고 등록 명의를 변경해 주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2020. 1. 15.경 자동차할부금융사인 도이치 파이낸셜을 통해 21,000,000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벨로스터, 25모4973)를 구입하게 한 후, 2020. 3. 30.경 박하은에게 해당 자동차를 인도하고 명의를 변경하게 함으로써, 박하은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투자금과 차량을 편취당한 피해자 측에서 사기 고소를 진행했고,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를 알리고 책임을 묻는 과정은 고소장 제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돈과 사업의 갈등이 형사문제로 번지면 민사상 돈 문제와 범죄 혐의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해결의 핵심

실제 법원 판결에서 상대방의 어떤 범죄가 인정됐는지와 어떤 형이 선고됐는지를 확인해야 처벌 결과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주장한 내용과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나누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투자금과 차를 빼앗은 사기

사기 징역 3년6개월 선고. 해율이 함께한 사건의 결과입니다.

- 고소한 가해자가 법원에서 책임을 지는지 확인해야 한다면
- 피해자의 고소 절차를 끝까지 함께할 조력을 찾는다면
- 가해자 처벌과 피해금 회수를 나누어 준비해야 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해율이 함께한 결과

법무법인 해율은 피해를 고소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사기 징역 3년6개월 선고입니다. 의뢰인의 입장과 실제 판단을 함께 살펴보면, 어떤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어떤 부분을 지켰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달라진 점

법원이 상대방의 범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한 결과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실제 처벌 판단으로 이어졌지만, 형사 처벌과 피해금 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사기 고소를 진행해 형사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다만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됐습니다. 가해자에게 형이 선고된 것과 피해금을 돌려받은 것은 별개입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판단을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율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사기 징역 3년6개월 선고. 해율이 함께한 사건의 결과입니다.

- 피해 자료를 수사와 재판에 맞춰 정리해야 한다면
- 고소 이후 선고 결과의 의미를 알고 싶다면
- 처벌 결과와 별도로 배상 절차가 필요하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